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0. 2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10.19. 신종갑 의원 외 7명
- 나. 회부일자 : 2016.10.20.
-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6.10.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영미 의원

가. 제안이유

2015. 11. 21.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안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4)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6조)
- 5)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설치·운영, 업무·역할,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의 대표발의 외 7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2016년10월 19일 제안되었고, 10월20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에 있는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